



# 시 보



제1656호 2024. 9. 2.(월)

## 고 시 · 공 고

-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2
- 공인 등록 공고----- 7
-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
-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36
-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 복무규정 제정 발령----- 40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훈령 제 860호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4년 9월 2일

## 목 포 시 장

###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할관청”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신규면허자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구역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양수·상속·대리운전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4조 중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을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을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제2호 중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을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제3호 중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를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와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휴직기간”을 “휴직기간 및 노사분규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5. <신 설>	5. <u>“관할관청” 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말한다.</u>
6. <신 설>	6. <u>“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 라 한다)함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u>
제3조(면허발급 기본자격) 개인택시 면허발급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면허발급 기본자격) (현행과 같음)
3.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구역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3. <u>신규면허자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사업구역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구역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u>
6. <신 설>	6. <u>양수·상속·대리운전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

제4조(면허기준 미달시의 기준완화)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대리운전은 다음 각호의 1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2. 면허신청 공고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국내에서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이

제4조(면허기준 미달시의 기준완화)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

1.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2.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

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제7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 (생략)

1. 휴직기간

제11조(심사위원회) ① ~ ② (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① (현행과 같음)

1. 휴직기간 및 노사분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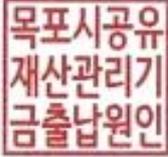
제11조(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 공인 등록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유 :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에 따른 공인 등록
2. 등록일 : 2024. 8. 27.(화)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출 납원인		1.8cm*1.8cm 푸른전남체	사용부서 회계과
등록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 용관인		2.0cm*2.0cm 푸른전남체	사용부서 회계과

2024년 8월 27일

목 포 시 장

##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

### 목 포 시 장

#### 1. 개정 이유

- 「주민투표법」 개정(22. 4. 26.시행)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 정비

#### 2.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 (개정)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 상위법 개정에 대한 조례 반영
  - 주민투표 대상 정비 : 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정비 : 안 제3조
  - 전자청구서명제도 도입 :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 : 안 제13조 내지 제17조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정비 : 안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3. 조례개정안 : 별첨 **【붙임 1】**

4.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붙임 2】**

5. 관련 법령 : 「주민투표법」

6. 관계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입법 예고

- 기 간 : 2024. 9. 2.(월) ~ 2024. 9. 23.(월) <21일간>

8.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 3】** 를 2024년 9월 23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우)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 방문 등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자치행정과(☎ 061-270-3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를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을 “외국인” 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를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로, “자는” 을 “외국인은” 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와 같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자·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 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로 하고, 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을 “생년월일을” 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포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에 따른 위원은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경우 한 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회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5조)제항 중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즉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는 종전의 제17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서 이동한다.

제21조(종전의 제18조) 중 “법 제13조제2항에”를 “법 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 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 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 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u></p> <p>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u>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u>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u></p> <p>2. <u>동주민센터의 소재지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u></p> <p>3. <u>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u></p>	<p><u>목포시 주민투표 조례</u></p> <p>제2조(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외국인</u>----- ----- ----- ----- ----- -----.</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u> ----- ----- ----- ----- <u>외국인</u>은 ----- -----.</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u>주민투표의 대상</u>은 법 제7조와 같다.</p>



② -----

---.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② -----

---. 다만, 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  
-----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  
-----.

② ----- 생년월일을-----  
-----  
-----  
-----  
-----  
-----.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1조 ~ 제12조 (생략)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효·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목포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목포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목포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

<삭 제>

<삭 제>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에 따른 위원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⑤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위임 신고를 받은 즉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처리기간) ① -----  
----- 교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

### 목 포 시 장

#### 1. 개정이유

- 목포시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법률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목포시 범죄예방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1조)
  -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준용
  - (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
- 시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지원사항 (안 제4조)

- (현행) 운영비, 출동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야식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개정) 1.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경비  
2. 대원 보호 상해보험 가입비

○ 자율방범대 지원과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6조)

- 자율방범대 지원 범위
-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
- 자율방범대 지원 중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5.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 부패영향분석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6. 입법예고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3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 (이하 “방범대” 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목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이하 “연합대” 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목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방법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법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법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현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방법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법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목포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방법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 및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목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

# 목 포 시 장

###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1976년 10월에 제정되어,
  - 2007년 8월 이후 개정 사항이 없는 시행규칙으로, 상위 조례와 상충되어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 상위조례 :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2. 관련법령 : 해당없음

3. 폐지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 ~ 2024. 9. 23. [21일간]

5. 관련부서 의견 및 예산 사항 : 해당없음

## 6.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3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방문 등

##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규 칙 명 : 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폐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훈령 제861호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 복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24년 9월 2일

목 포 시 장

###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 복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전원의 복무관리, 교육 훈련 등 인사관리와 복무기준에 대한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시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하 “공영버스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영버스 운전원의 임무)** 공영버스 운전원은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정해진 노선 및 시간에 따른 운행
2. 정류장 이용객 승하차
3. 차량 관리 및 청소
4. 대기근무(대체운행 및 사고차량 인계, 정비보조, 현금계수 등)
5. 그 밖에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근무형태)** ① 공영버스 운전원은 2~3일 운행(오전 또는 오후) 1일휴무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별도로 월 1~2회 대기근무(오전 또는 오후)를 수행하며, 공영버스의 연중무휴 운영이 불가피한 운수 사업의 특수한 여건상 별도 휴무일은 정하지 않는다. 다만, 근무표에 따른 본인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공영버스 운전원은 1일 2교대제로 근무자를 편성하며, 정규 근무시간은 총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기본공제로 하며 이를 포함한 1일 8시간으로 한다.

③ 위 공제시간 외 1일 차량별 운행 후 휴게시간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총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지 않고 실근로시간으로 적용한다.

④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출·퇴근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되, 운행노선별 첫 운행시간(주유시간 포함) 전과 막차시간 후의 시간을 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시간 이하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공영버스 운전원은 “현업근무자”로 지정하고 시간외근무의 산정 기준은 1개월 단위로 한다.

**제5조(특별근무)**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근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재해발생
2. 시내버스 파업
3. 시 축제·행사 기간에 따라 증편 운행이 필요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근무기간)** ① 공영버스 운전원의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횡수에 관계 없이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총 근무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영버스 직영사업의 지속 운영이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하며, 이에 따라 재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목포시장)가 공영버스 운전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영버스 운전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정년)** ① 공영버스 운전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공영버스 운전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운수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한다.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나.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다.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채용 시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과 정기 교육 받기 12시간 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휴가 등)** ① 공영버스 운전원의 휴가일수 계산, 연가, 특별휴가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 별표 2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의 규정에 따른다.

②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과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복무관리)** ① 공영버스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거나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1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명시한 신고서를 관리자(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자(부서장)가 조정할 수 있다.

※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기근무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대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2. 이용객에게 공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3. 승하차할 경우 이용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며, 정해진 정류장에는 반드시 정차하여야 한다.

4. 지정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어떠한 이유로도 직무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금품, 향응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6. 운전원은 운행 후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에서 분실물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8. 정당한 업무지시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9. 제1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 별표 4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부서장)는 복무사항 전반에 대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고 사실확인을 위해 사유서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복무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 ① 공영버스 운전원은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성과 및 연봉산정에 반영하고 차후 임용연장 또는 임용해지의 기준자료로 활용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따르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포함한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제12조(금지사항)** 공영버스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음주운전(숙취 음주운전 포함)

2. 근무 중 음주행위

3.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
4. 운송수입의 편취 및 습득물의 무단 사용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차량 이탈,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6. 타인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8. 승객과 언쟁하거나 다투는 행위 등 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

**제13조(공영버스 운전원에 대한 징계)** 관리자(부서장)는 공영버스 운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조사 의뢰 및 징계 요청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 등을 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직원들의 이간, 불화, 운행 거부, 집단 선동한 경우
4. 1년 이내 3회 이상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등 부과된 경우
5.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연간 3회 이상 사고 발생 시
6.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한 경우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한 경우
8. 제10조 각 호에 따른 운전원 준수사항 및 제12조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차량사고 및 보고)** ① 공영버스 운전원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는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한다.

1.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전·후방등, 아웃사이드 미러 등 소모성 물품)
2.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납부기한 이내 반드시 납부)

②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고경위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운행일지)** 공영버스 운전원은 운행 후, 운행차량, 운행노선,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 [별지 제3호 서식] 과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관리)** 공영버스 운전원은 운행전 차량내·외부 등화장치, 차량운행장비(브레이크, 타이어공기압) 등을 매일 점검하고, 운행 전후 차량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 차량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서약)** 운전원은 최초 채용이 되었을 때,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 별지
1. 결근(조퇴) 신청서
  2. 사고경위서
  3. 차량 운행일지 및 일일점검표
  4. 월별 차량 운행일지(종합)
  5. 서약서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결근 (조퇴) 신고서

- 성 명
  
- 담당 차량번호

본인은 아래와 같이 결근(조퇴)하고자 신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유 :

2. 기 간 :

3. 업무대행 :

20 . . .

신고자 성명 (인)

목 포 시 장 귀 하



(뒷면)

## 사고 장소

## 사고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 차량 운행일지 및 일일점검표

년      월      일 (      요일)

차량번호		전일누계	km	유류 수 불 현 황	전 일 잔 량		
					금일급유량		
운 전 원	서명	금일운행	km		금일소비량		
					금 일 잔 량		
		누계	km		주 유 금 액	원	
노 선	시 간 (오전/오후)	운행시간		운 행 (km)			
		출발시간	도착시간				

※ 점검결과 기재 시 참고 : 양호 ○ / 요수리 △ / 요교환 X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1. 운행 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 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사항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4. 기타사항		



## 서 약 서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2. 본인은 근무기간 동안 바른 언행과 목포시 공영버스 운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3.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습득한 기밀 및 정보는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운전면허정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시에 보고하고, 보고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한다.
5. 본인은 목포시 ‘인사규정, 보수규정, 운전원 복무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을 성실히 따른다.

상기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목 포 시 장 귀하